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276호
- 발 의 자 : 채인묵 의원(찬성자 9명)
- 발의일자 : 2020년 2월 5일
-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 체육진흥기금은 시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고,
  - 출연금: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
  - 기금전출금: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
- 종전의 이 조례 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6932호, 2018.10.4.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긴 문장의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현행 제3조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약칭의 위치를 옮겨 규정함.(안 제2조)
- 나. '출연금'을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함.(안 제3조 및 제8조)
- 다.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이 처리할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항으로 나누어 규정함.(안 제11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5.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취지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 재원을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금전출금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그 밖에 일부 인용조문 정비, 일부 문장의 체계 정비, 일부 한자어 용어를 쉽게 고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2) 기금의 재원조성으로서의 출연행위

- 지방 기금(基金)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sup>1)</sup>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자금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sup>1)</sup>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출연(出捐)이란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sup>1)</sup>.
-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출연을 기금의 조성재원<sup>2)</sup>으로 할 수 있고, 각 기금은 개별기금별로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조례 등에 기금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연 여부는 기금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에서 예산요구 시 제출한 개별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토대로 그 타당성을 검토·결정하며, 각 개별기금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일단 자체단체의 출연이 결정된 후에는 기금소관부서 책임 하에

1) 「민법」은 특히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관하여 출연재산이라는 용어를 쓰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이며 그 출연행위에 의해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 함.

2) 자치단체의 출연, 민간인의 출연, 부담금, 기금운용수익, 기타수입, 지방채

집행 또는 변경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자치단체 출연이 있었던 기금이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판단하고,

추가 출연은 당해 기금사업 규모의 적정성, 자체자금 조달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되 가능한 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음.

### (3) 기금운용계획 ·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은 예산부서가 작성하는 총괄보고서와 기금운용부서가 작성하는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구분됨.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은 수입계획에 계상하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수입항목 중 전입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721)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222-01) 등을 계상함.

#### 〈수입항목 별 작성기준〉

721 전입금	목	설 정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21-02 공사·공단전입금	1. 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721-04 기금전입금	1.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20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09〉

## 〈기금의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구 분	과 목	
수입	전입금	①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보조금	보조금(500)
	차입금	국내차입금(610), 국외차입금(62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u>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713-03)</u> , 공사·공단 등 융자금 이자수입(216-04), 시군구 <u>융자금회수 수입(713-04)</u> , 시군구 <u>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6)</u> , <u>통화금융기관 융자금(713-02)</u> , <u>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216-03)</u>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722-03)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예수금	예수금수입(722-01)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3), 예탁금이자수입(722-04)
	기타수입	그 외 세입과목
지출	비용자성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u>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1-04)</u> , <u>공사공단 등 융자금(513-03)</u>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기본경비 (구 물건비)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 제외)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예치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차입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리금상환(705)
기타지출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308-11,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잔액 반환(802-01, 02), 과년도 수입의 반환(802-03) 등	

#### (4) 개정의 타당성

- 현행 조례 제3조는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정부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을 열거하고 있는 바, 이 때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행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 조례의 규정이 이해될 수 있다 하겠으나,
- (i) 출연금은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용어 사용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점, (ii)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iii)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기금의 수입과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9개 과목으로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한편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출연금’을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인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수입항목별 작성기준

2012년	2020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① 출연금</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24) 및 기초단체의 광역단체에의 사업비 부담금(227-01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계상</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① 전입금</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721)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222-01) 등 계상</li> </ul>

-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2012년까지는 기금의 주요수입항목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출연금’으로 표기했으나, 2013년부터는 이를 ‘전입금’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주는회계’는 전출금, ‘받는회계’는 전입금이라는 과목을 사용<sup>3)</sup>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전출금’보다는 ‘전입금’으로 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u>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 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 3. (생략) ② <u>다만,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을 포함한다.</u>	제3조(기금의 조성) ① <u>기금</u> ----- ----- ----- ----. 1. ----- <u>기금전출금</u> 2. · 3. (현행과 같음) ② <u>시장은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기금전출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u>	제3조(기금의 조성) ① <u>기금</u> ----- ----- ----- -.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u>로부터의 전입금</u> 2. · 3. (현행과 같음) ② <u>시장은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u>

3) 「2020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18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 ③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제4조 제5호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del>기금전출금</del> ----- ----- ----- ----- ③ ----- ----- 기금 <del>전출금</del> ----- 제4조 <del>제6호</del> -----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del>전입금</del> ----- ----- ----- ----- ③ ----- ----- 전입금 ----- ----- -----

- 그 밖에 일부 조문번호와 띄어쓰기의 오류를 바로잡고, 긴 문장의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며,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u>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 담당</u>	제10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u>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u> 을 둔다.



현 행	개 정 안
<p>실·본부·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체육정책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의 규정을 따르고,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따른다.</p>	<p>1. 기금운용관: 체육업무 담당 실·본부·국장</p> <p>2. 기금분임운용관: 체육정책과장</p> <p>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 ----- ----- 갖추어 두고----- -- 증빙서류----- -----.</p> <p>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 -----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p>